

-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
2. 행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4
3.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의안 번호	21-36
----------	-------

제안일자 : 2021. 4.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제52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건설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 편익을 증진하고 구 행정의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감사기간은 8일간으로 한다. (2021. 6. 2. ~ 6. 9.)
- 감사대상기관은 구의회사무국, 구분청, 동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으로 한다.
-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7명),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8명), 복지도시위원회 전원(9명)으로 한다.
-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실, 행정건설위원회실, 복지도시위원회실로 한다.

3.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 제50조, 제52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조 등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0조, 제52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마포구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활용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1. 6. 2.(수) ~ 6. 9.(수)[8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부서)

○ 마포구의회사무국

4.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장소

구 분	감 사 위 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전문위원	사무직원
의 회 운 영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 (7명)	마포구의회 사 무 국	의회운영 위원회실	신준호	최은영

5. 감사일정

구분	일 정	내 용	비 고
준비 단계	2021.4.20.(화)	○ 감사계획서 수립, 채택 ○ 서류제출, 증인출석요구서 작성	
	4.21.(수)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감사계획 통보	
	~ 4.28.(수)	○ 감사 요구 목록 수합	
	~ 5.21.(금)	○ 감사관계 자료 수합 ○ 감사자료 검토 및 문제점 파악	
실시 단계	6. 2.(수) ~ 6. 9.(수)	○ 위원장의 감사선언 ○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 사무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증인선서 -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 감사종료 선언	의회사무국 일정: 6.4.(금)
감처사리 결단 과계	~ 6.24.(목)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 감사결과 보고 (본회의)	
	~ 8. 2.(월)	○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6. 감사요령

- 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전반에 관하여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 서류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

7. 행정사항

- 가. 위원장은 감사계획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고 감사관련 자료를 수합한다.
- 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

행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그리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감사기간

2021. 6. 2.(수) ~ 6. 9.(수) [8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구본청(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관광일자리국, 교통건설국)
- 동주민센터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4.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장소

구 분	감사위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전문위원	사무직원
행정건설 위원회	행정건설 위원회 위원 전원 (8명)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행정관리국 교통건설국 기획재정국	행정건설 위원회실	유준상	권하나
		관광일자리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최국모	이상은
		동주민센터	해당 동주민센터	유준상	권하나

5. 감사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2021. 6. 2.(수)	○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2021. 6. 3.(목)	○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 - 총 무 과 - 자치행정과 - 홍 보 과 - 청소행정과 - 민원여권과 - 전산정보과	
2021. 6. 4.(금)	○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감사 - 기획예산과 - 재 무 과 - 징 수 과 - 세 무 1 과 - 세 무 2 과 - 부동산정보과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2021. 6. 7.(월)	○ 관광일자리국 행정사무감사 - 관 광 과 - 일자리지원과 - 문화예술과 - 지역경제과 - 생활체육과	
2021. 6. 8.(화)	○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 - 교통행정과 - 교통지도과 - 건설관리과 - 도 로 과 - 치 수 과	
2021. 6. 9.(수)	○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 마포1번가연구단 행정사무감사 ○ 마포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 감사종료 선언	

6. 감사요령

감사는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관광일자리국, 교통건설국의 각 과 및 동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별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 서류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하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

7. 감사 진행순서

- 가. 감사실시 선언
- 나. 위원장 인사
- 다. 증인선서
- 라. 피감 부서장 인사 및 간부 소개
- 마. 업무보고 청취
- 바. 질의·답변
- 사. 감사종료 선언

8. 행정사항

- 가.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감사관련 자료를 수합한다.
- 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
- 다. 사정에 따라 감사일정 및 감사 장소, 감사반 변경, 감사대상기관의 축소 등은 감사 위원회의 의결로 변경될 수 있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 감사의 목적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그리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감사기간

2021. 6. 2.(수) ~ 6. 9.(수) [8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부서)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4.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장소

구 분	감 사 위 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전문위원	사무직원
복지도시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전원	복지교육국	복지도시 위원회실	조광현	박슬기
		도시환경국		신준호	최은영
		보 건 소			
		동 주민 센터	동 주민센터	조광현	박슬기

5. 감사일정

일 정	감 사 대 상	비 고
2021. 6. 2.(수)	○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2021. 6. 3.(목)	○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2021. 6. 4.(금)	○ 복지교육국 행정사무감사 -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과 - 노인장애인과	
2021. 6. 7.(월)	○ 복지교육국 행정사무감사 - 여성가족과 - 아동청년과 - 교육지원과 - 마포중앙도서관	
2021. 6. 8.(화)	○ 도시환경국 행정사무감사 - 주 택 과 - 도시계획과 - 건 축 과 - 도시안전과 - 환 경 과 - 공원녹지과	
2021. 6. 9.(수)	○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 보건행정과 - 위 생 과 - 건강증진과 - 의 약 과	

6. 감사요령

감사는 복지교육국과 도시환경국 및 보건소 각 과, 동 주민센터별로 구 행정에 관하여 보고 및 질의, 서류제출 요구와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

7. 감사 진행순서

-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 부서장 인사 및 간부 소개
- 업무보고
- 감사실시(필요시 현지 확인)
- 감사종료 선언

8. 행정사항

- 위원장은 감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
-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
-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정에 따라 감사 일정 및 감사 장소, 감사위원 변경, 감사대상기관의 축소 등은 복지도시위원회의 의결로 변경될 수 있다.